

◆ 이렇게 생각한다 ◆

자조금제도

이영주/한국농어민신문 축산부 기자

자조금제도는 지난 90년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데 이익집단 구성원이 납부하는 여러가지 자조적 재원을 포괄하나 구성원 자발성에 기초한 납부로 공동 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조성, 사용되는 자금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되는 축산분야의 자조금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조금제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양계분야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육계계열화업체와 외식업체의 닭고기 홍보용 제도로 변형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는 자금조성 단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양계자조금은 계열업체들이 가장 많은 자금을 냈고 특히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데 효자 노릇을 한것도 무시 못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조성된 자조금의 50%에 해당하는 자금을 무상 보조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작년 사용된 자조금의 90%이상인 2억8천8백여만원이 닭고기소비홍보 촉진사업으로 사용되었으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는 육계계열화업체와 외식업체에게 전가되고

있어 양계자조금의 본연의 취지가 변질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이는 양계 자조금제도가 본격 시행된 92년 납부대상인원 6천명 가운데 6%인 3백여명만 납부, 자체조성자금은 8천6백64만6천원, 93년 9천만19만원, 94년은 사업승인이 없었고, 95년 2억1천1백55만3천원에 그치는 등 자금조성금액이 적은 것이 요인이라고 지적이다.

정부도 협회가 조성한 자조금의 50%를 보조지원하고 있으나 미약한 조성자금으로 인해 소비홍보를 위한 단발성 현상공모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계협회가 작년 조성한 자조금은 3억1천7백17만2천원이며 이 자금에는 정부보조 1억원이 포함된 자금이다.

이 자금중 그나마 11개 육계계열화업체에서 1억9천만원을 납부했고 생산자들자체 조성금액은 2천여만원에 그쳤다. 즉, 협회 자체 조성자금 2억1천1백55만3천원은 육계소비 약화로 위기감을 느낀 계열화업체에서 소비홍보를 위해 공동조성한 것이며, 대다수 양계생산자들이 양계업계공동 관심사항 해결을 위한 참여는 미약한 수준이다.

양돈업계의 자조금 모금은 현재 양돈협회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수납토록 하고 있는데 년간 1천두이하의 농가는 2만원, 5천두이하 사육규모 농가는 10만원, 5천두이상 사육농가는 35만원의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 자조금사업조성 자조금은 협회와 연관될 경우 세미나 등의 행사에 타 단체와 협동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자조금으로 사용한다.

조성된 자조금중 돈육의 판로확대와 수급안정, 가격조절용으로 자조금이 사용될 경우에 한해 정부로부터 조성된 자금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작년 양돈협회 조성자금은 1억원 미만이며 금년 목표도 2억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양돈농가의 참여 저조로 목표금액 조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자금조성액 부진은 현행 조성금 관련법이 비의무규정이고 양축농가의 자발적인 납부에 의존하고 있어 자조금이 개별농가에 단기간 가시적 효과를 주지 못해 양축가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축산분야의 자조금은 축종별로 관련인들이 일부 금액을 모금해 몇차례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양계자조금 제도개선을 위해 축산관련 협회는 농어촌 특별법내에 자조금납부 의무화규정 마련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또한 일부 생산자들의 협찬금으로 조성된 자금외에 대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무임편승 방지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양계 협회는 올해 닭고기와 계란 소비확대를 위한 자조금 조성목표도 3억원이상 책정하고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어 자조금제도 개선과

활성화는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축산물 개방을 앞두고 수출국과 무역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국내 축산업계는 정부지원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자생적 생존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 촉박한 실정에 처해있다.

따라서 WTO체제하에서 농가지원 정부보조금도 협정상 제약을 받고 있으나 생산자 단체 순수한 자조금조성은 협정에 위배되지 않아 협정국과 통상마찰 발생우려가 없는 경쟁력 강화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비추어 볼때 전면적인 자조금제도개편 필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록업계도 자조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각각의 업계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양록업계는 타 분야와 달리 각종 수입한약재의 직접적인 피해권에 포함되어 자조금시행이 어느 축종보다 절박한 시점에 도래해 있다.

우선 회원들의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뜻있는 양록인들을 대상으로 사육두수별로 일정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국산녹용이 수입품에 비해 효능과 품질에서 우수함을 홍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조금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정부의 입법활동에 의해 자조금제도가 의무적인 납부제도로 정착되기 전에 양록업계는 일정한 자금을 모아 수입품과의 비교분석, 신토불이의 이미지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둘째, 정부의 입법활동에 의해 자조금제도를 의무적인 납부제도로 확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조금을 수납하지 않는 양록업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자조금 정립도 사육하고 있는 사슴의 두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내도록 해 공평성을 기할 수 있다.

또한 모아진 자금은 양록업계 공동 관심사인 양록산물의 소비홍보와 수입품에 비해 우수한 품질검증 사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셋째, 자조금조성 취지와 자금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양록농가 설득을 통해 양록산업의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조금사업은 정부의 기간시설인 고속도로, 항만, 철도에 비유되는데 필요성은 인정되나 회원개인이 시행하기에는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추진한다. 특히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여 양록농가를 설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누구나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나 누구도 고속도로를 건설하려 하지 않는 현상과 같은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고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넷째, 자조금 사용에 있어 조성된 자금을 필

요한 시기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자조금은 홍보와 판로확대, 수급안정, 가격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임에 따라 그 시기와 자금규모, 방법등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있어야 자금사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자조금을 사용할 때 철저한 관리가 없으면 자금낭비는 물론 자조금 조성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이에따라 수입품에 의한 국내시장 잡식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동의 관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양록업계의 자조금시행은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결국 자조금제도는 생산자 공동이익 실행을 위한 자금마련임을 감안할 때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자조금제도 정착을 위한 생산자 단체의 제도적개선 노력과 정부의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시급히 구축해 축산물 개방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장치로 정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회원이 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① 양록정책 및 협회운영에 참여하며 임원선거 및 피선거권을 부여 받는다.
- ②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한국양록」을 무상으로 받아 볼 수 있다.
- ③ 월동용 조사료(갈잎, 알팔파)를 일반 업체보다 10~15%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 ④ 마취약제 및 회복제, 마취기구, 녹혈용기를 염가에 공급받을 수 있다.
- ⑤ 우수사슴 선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이 생산한 양질의 녹용을 작판장에서 수매할 때 우대받는다.
- ⑥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협회지정 사슴분양장이 될 수 있다.
- ⑦ 협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전시회, 선진사슴농장 시찰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⑧ 이밖에 농가에서 필요로한 무형의 정보를 꼭넓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협회로부터 측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